##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4611

발의연월일: 2022. 1. 27.

발 의 자:전용기·김승원·김용민

민형배 · 오영환 · 유정주

윤영덕 · 장경태 · 한준호

황운하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 제21대 국회의원 중 청년의원(40세 미만)은 총 13명(이 중 30세 미만은 2명에 불과)으로 전체 국회의원의 4. 3%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총선 당시 전체 유권자의 33.8%가 청년(40세 미만) 유권자임을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

세계 주요국과의 비교를 위해 OECD 국가들을 살펴보아도 우리나라의 40세 이하 청년의원의 비율은 가장 낮은 국가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청년의 취업 및 주거 안정 등에 대한 문제가 심화 되고 있으며, 각 정당 별로 청년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은 매우 부족하여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 문제해결이 더욱 절실한 상황임.

이에 청년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정치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의3 신설 및 제28조제2항).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6조의3(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① 국가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청년(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이하 "청년추천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청년추천보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경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청년추천보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예산에계상된 청년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
  - 1.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총액의 100분의 40은 최근 실시한 임 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비례대표전국선 거구 및 지역구에서 해당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말 한다. 이하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그 잔여분은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청년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 당별 지역구 청년후보자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 2.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
  - 가.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0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 나.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청년추천보조금은 가목에 의하여 각 정당에 배분되는 청년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청년추천보조금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한다.

제28조제2항 중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를 "100분

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치발 전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경상보조금을 지급받는 정당은 청년에 해당하는 연령을 당 헌·당규로 정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시·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 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청년추천보조금은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예산 에 계상된 청년추천보조금의 1 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청년추 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

1.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 수의 100분의 2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청년추천보 조금 총액의 100분의 40은 지 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총액의 100분의 40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 표수의 비율(비례대표전국선 거구 및 지역구에서 해당 정 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국회의 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그 잔여분은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청 년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 별 지역구 청년후보자수의 비 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2.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

수의 100분의 2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

가.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1
00분의 20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제1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
급한다.

나.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 00분의 15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청년추천 보조금은 가목에 의하여 각 정당에 배분되는 청년 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청년추천보조금은 임기만료 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 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저 (생 략)

②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 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 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④ (생 략)

이내에 정당에 지급한다.
∥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100분의 1</u>
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
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치
발전을 위하여
경상보조금을 지급받는 정당은
청년에 해당하는 연령을 당헌.
당규로 정하여야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